

제303회 시의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2021. 11. 09.(화)

I·SEŌ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정 관 변 경 보 고

정관 변경(안)

I. 변경이유

- 市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정비 추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및 지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

II. 주요내용

1 임원 결격사유 강화

-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임원 결격사유 2개 호 추가 (제11조 제1항)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제11조 제1항 (임원의 결격사유) | <p>·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미성년자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해당자3. 횡령·배임의 형 확정 및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확정 후 2년 미경과 자4. (노동이사 대상) 사용자 | <p>·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5. 「지방출자출연법」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해임된 후 3년 미경과 자6. 「지방공기업법」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후 2년 미경과 자 |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」 - II. 임원의 인사

5-다. 임원의 임명

-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·출연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임원) ③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
2.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
3.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④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**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그 **임원을 해임**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, 그 출자·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**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**

「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」 - II. 임원의 인사

5-라. 임원의 임명

-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사·공단(이하 "공기업"이라 함)의 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**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**에 해당하거나 지방공사·공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

「지방공기업법」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**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**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
2.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
3.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

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**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**할 수 있다.

1.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삭제 <2019. 12. 3.>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**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**
5. **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**
6. 삭제 <2015. 12. 15.>

- 임원이 결격사유로 인해 퇴직 시, 퇴직 전 관여행위의 효력 유지 (제11조 제3항)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1조 (임원의 결격사유) | ① 임원 결격사유 ②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퇴직 <신 설> ③ 노동이사직 탈퇴 또는 사임사유 | (현행과 같음) ③ <u>결격사유로 인해 퇴직할 시,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 유지</u> ④ 노동이사직 탈퇴 또는 사임사유 |

「지방공기업법」

제60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2 조직 및 정원 정관에 반영

- 市 주요규정 정비에 따라 ‘조직 및 정원’ 조항은 별도 신설 (제14조의 2)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4조 제2항 (직원의 임면등) | · 재단의 기구 및 정원, 복무, 보수 등의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함 | · <u>재단의 복무, 보수 등의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함</u> (‘기구 및 정원’ 삭제) |
| 제14조의 2 (조직 및 정원) | <신 설> | · <u>조직 및 정원을 별도조항으로 분리·신설하여 <별표>에 기재하고,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함</u> |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|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--|-----|---|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
| 별표1 | <신 설> | <p>[별표 1] 조직도</p> <pre> graph TD ISJ[이 사 장] --- ISH[이사회] ISJ --- GMS[감 사] ISJ --- BNB[본 부] ISJ --- YJ[영업점] BNB --- KJ[경영전략 부문] BNB --- SJ[사업전략 부문] BNB --- SS[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] GMS --- GMSH[감사실] </pre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별표2 | <신 설> | <p>[별표 2] 정원표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원</th> <th rowspan="2">임원 (상임)</th> <th colspan="4">일 반 직 원</th> <th rowspan="2">전문 직원</th> <th rowspan="2">지원 직원</th> </tr> <tr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</th> <th>4급이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78</td> <td>3</td> <td>9</td> <td>28</td> <td>68</td> <td>301</td> <td>29</td> <td>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총원 | 임원 (상임) | 일 반 직 원 | | | | 전문 직원 | 지원 직원 | 1급 | 2급 | 3급 | 4급이하 | 478 | 3 | 9 | 28 | 68 | 301 | 29 | 40 |
| 총원 | 임원 (상임) | 일 반 직 원 | | | | 전문 직원 | 지원 직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급 | 2급 | 3급 | 4급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78 | 3 | 9 | 28 | 68 | 301 | 29 | 4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「투자출연기관 주요규정 현황점검 및 정비추진」 (市 공기업담당관)

○ 조직 및 직제

조직 및 정원표는 정관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반영하고, 직제규정 정원표와 일치 시키도록 함.

○ 정관 표준안

제00조(조직 및 정원) 00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
3 조문 문구 정비

상위 지침에 맞게 '결산 완료 및 제출 기한' 조항 명확화 (제30조 제4항)

| 구 분 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제30조 제4항 (예산과 결산) | <p>· 재단의 결산서는 당해연도 종료 후 각 호와 같이 제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 : 2개월 이내 2. 시의회 : 2개월 이내 결산 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| <p>·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, <u>결산을 완료하고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</u> ('시의회' 제출기간 변경)</p> |
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」

제13조(예산의 결산)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·대차대조표·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·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III. 시행일 등

□ **시행일**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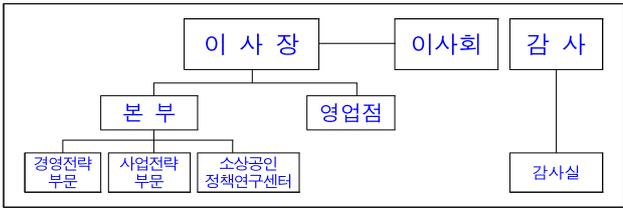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|--|
| <p>정 관</p> <p>제1장 총 칙 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2장 임 원 제7조~제10조 -- (기재 생략) --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미성년자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. 노동이사의 경우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<p><신 설></p> | <p>정 관</p> <p>제1장 총 칙 제1조~제6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제2장 임 원 제7조~제10조 -- (현행과 같음) --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6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|

| 현 행 | 변 경(안) |
|--|--|
| <p>②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2조~제13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14조(직원의 임면등)</p> <p>①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② 재단의 기구 및 정원, 복무, 보수 등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p> <p>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이 사 회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업 무</p> <p>제22조~제27조의3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회 계</p> <p>제28조~제29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30조(예산과 결산)</p> <p>①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 <p>②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-- (현행 제3항과 같음) --</p> <p>제12조~제13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제14조(직원의 임면등)</p> <p>①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② <u>재단의 복무, 보수 등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<u>제14조의 2(조직 및 정원) 재단의 조직은 별표1, 정원은 별표2와 같고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이 사 회</p> <p>제15조~제21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4장 업 무</p> <p>제22조~제27조의3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장 회 계</p> <p>제28조~제29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>제30조(예산과 결산)</p> <p>①~③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④ <u>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을 완료하고,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과 시의회(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)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|

| 현 행 | 변 경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-|---|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
| <p>1. 시장에는 2개월 이내</p> <p>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<u>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</u></p> <p>제31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해 산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20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별지> 기본재산 목록 -- (기재 생략) --</p> | <p>제31조~제35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해 산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20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21)</p> <p><u>이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 <p><u>[별표1] 조직도</u></p>  <pre> graph TD ISZ[이사장] --- ISH[이사회] ISZ --- GMS[감사] ISZ --- BNB[본부] ISZ --- YJ[영업점] BNB --- KJ[경영전략 부문] BNB --- SJ[사업전략 부문] BNB --- SSK[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] GMS --- GMSL[감사실] </pre> <p><u>[별표2] 정원표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20 1655 1449 1823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총원</th> <th rowspan="2">임원 (상임)</th> <th colspan="4">일 반 직 원</th> <th rowspan="2">전문 직원</th> <th rowspan="2">지원 직원</th> </tr> <tr> <th>1급</th> <th>2급</th> <th>3급</th> <th>4급 이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478</td> <td>3</td> <td>9</td> <td>28</td> <td>68</td> <td>301</td> <td>29</td> <td>4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별지> 기본재산 목록 -- (현행과 같음) --</p> | 총원 | 임원 (상임) | 일 반 직 원 | | | | 전문 직원 | 지원 직원 | 1급 | 2급 | 3급 | 4급 이하 | 478 | 3 | 9 | 28 | 68 | 301 | 29 | 40 |
| 총원 | 임원 (상임) | | | 일 반 직 원 | | | | | | 전문 직원 | 지원 직원 | | | | | | | | | | |
| | | 1급 | 2급 | 3급 | 4급 이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78 | 3 | 9 | 28 | 68 | 301 | 29 | 4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